

# 강원특별자치도

## 경고·주의

제 목 계약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④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총 391건의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계약 체결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공사	용역	물품
	391	42	93	256
2021.11.~12.	18	1	6	11
2022	121	14	30	77
2023	154	21	40	93
2024.1.~현재	98	6	17	75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20조·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sup>1)</sup>,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며,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sup>2)</sup>으로 정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sup>3)</sup>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연배상금: 계약금액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 지체일수

지연배상금률: 공사(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1000분의 0.8), 물품수리·대여 또는 용역(1000분의 1.3)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훈령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물품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 납품 지체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안내하였어야 했으며, 지체일수가 10일이 넘으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부서에 알림문서를 시행하였어야 했다.

또한 계약업체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을 받았을 때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수량 등을 확인하여 검사(수)를 하여야 했고, 해당 물품이 전부 납품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물품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했고, 계약·지출증빙서류 등을 규정에 맞게 편철하여 보존 관리하였어야 했다.

3) 세부내용 붙임 참조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계약 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행정처리 부적정

○○소방서(○○○○○○,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2023. 3. 27. ○○소방서 상반기 ○○○○ ○○ ○○을 진행하면서 ○○○○○○ 등 18종 37점을 2023. 4. 28.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23. 4. 21. 계약상대자인 ○○○○○○○○(대표: ○○○)에서 ○○○○○○ 등 2종 4점의 물품 수급이 어려워 2023. 5. 31.까지 납품하겠다는 물품 납품확약서와 함께 ○○○○○○○○ 등 16종 33점을 납품하였고, 납품확약서를 받은 사업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2023. 4. 21. 전체물품에 대한 검사(수)를 해주었으며, 납품되지 않은 물품이 있음에도 2023. 4. 26. 전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실제 물품은 납품기한보다 52일이 지난 2023. 6. 19.에 납품 완료된 사실이 있음에도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나. 담보책임 존속기간 산정 및 지출증빙서류 보존·관리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2023년 ○○소방서 상반기 ○○○○ 구매 건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였는데 물품에 대한 검사(수)결과보고 일자(2023. 4. 21.), 물품납품에 대한 물품 납품확인영수증 일자(2023. 4. 2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의 납품일자는 2023. 4. 27.로 작성하는 등 물품에 대한 검사(수)완료 일자를 각각 달리 작성한 채 지출증빙서류를 보존·관리하였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4. 7. 3.까지 ○○○○○○ ○○○○○○에서 ○○○○○○○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소방서 ○○○ ○○○○ 구매 계약 업무 처리 시 2023. 4. 21.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확약서를 제출하였을 때 ○○○○ ○○에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체 물품에 대한 검사(수) 결과를 처리하였는데 ○○○○○○에서는 정당한 사유이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하여 납품기한을 늘려주었어야 하나, 변경계약없이 계약물품이 전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실제 확약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확약 날짜보다 12일이 지나서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전체 납품지연일수(52일)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물품 검사(수) 일자와 물품납품영수일자, 하자보증 시작일자가 서로 상이한 상태로 계약·지출증빙서류를 관리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는 2023. 1. 4.부터 2023. 7. 9.까지 ○○○○○○ ○○○○○○에서 ○○○○○○○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소방서 ○○○ ○○○○ 구매 업무 처리 시 2023. 4. 21.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확약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체 물품에 대한 검사(수)결과를 처리하였고, 실제 확약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확약 날짜보다 12일이 지나서 물품이 납품되었을 때 전체 납품지연일수(52일)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보고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계약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7. 9.까지 ○○○○○ ○○○○○에서 ○○○○를 담당하면서 ○○소방서 ○○○ ○○○○ 구매 계약 업무 처리 시 2023. 4. 21.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확약서를 제출하였을 때 ○○○○○에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체 물품에 대한 검사(수)결과를 처리하였는데 ○○○○○에서는 정당한 사유이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하여 납품기한을 늘려주었어야 하나, 변경계약없이 계약물품이 전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실제 확약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확약 날짜보다 12일이 지나서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전체 납품지연일수(52일)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물품 검사(수) 일자와 물품 납품영수일자, 하자보증 시작일자가 서로 상이한 상태로 계약·지출증빙서류를 관리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3. 8. 13.까지 ○○○○○ ○○○○○에서 ○○○○ ○○○○를 담당하면서 ○○소방서 ○○○ ○○○○ 구매 업무 처리 시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확약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체 물품에 대한 검사(수)결과를 처리하였고, 실제 확약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확약 날짜보다 12일이 지나서 물품이 납품되었을 때 전체 납품지연일수(52일)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보고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계약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6.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라며, '5. ○○○ 노유자시설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서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소방서장은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망☆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주의·시정

제 목 세입세출의현금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 ○○○○○) 소방○ ○○○  
③ ○○소방서 ○○○○○ 소방○ ○○○

내 용

###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금, 급여공제금, 반납금 및 세입금 등을 운용하기 위해 세입세출의현금 공금예금계좌 및 보통예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sup>4)</sup>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

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과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훈령」 제62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보통예금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되,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공금계좌)로 즉시이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6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자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

4)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입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훈령」 제64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sup>5)</sup>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되 출납원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훈령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되,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영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을 통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청구자에게 반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관리·운영하였어야 했다.

- 
- 5)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귀속 예정일  
3. 반환절차 등 반환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또한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하여야 했고, 금액의 성격을 보관금과 잡종금으로 구분하고 e-호조 시스템으로 납입고지·수납등록을 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였어야 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할 때는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 결재를 받고 반환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했고, 반환 영수증 및 지출 증거서류들을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증거서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였어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부적정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를 운용하면서 퇴직소방공무원 초과근무소송 관련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1,537천 원을 3년 8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 나. 세입세출외현금 증거서류 보존·관리 소홀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지출서류 및 증거서류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편철하지 않고 관리하였고, 특히 2022년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는 찾을 수 없었으며, 2024년 지출결의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지출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채 보존·관리하였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19. 11. 1.부터 2023. 1. 3.까지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12. 18.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로 입금된 초과근무소송관련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관금명·보관금액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환급금을 2년 1개월 동안 보관하였으며, 2022년 세입세출외현금 14건을 지출하고도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 등 증거서류를 보존·관리하지 않았다.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4. 1. 2.까지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12. 18.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로 입금된 초과근무소송관련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관금명·보관금액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환급금을 1년 동안 보관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시 증거서류들을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지 않은 채 보존·관리하였다.

소방☼ ☼☼☼은 2014. 1. 3.부터 현재까지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12. 18.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로 입금된 초과근무소송관련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관금명·보관금액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환급금을 7개월 동안 보관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증거서류들을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지 않은 채 보존·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 6.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에 보관되고 있는 초과근무소송관련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에 대해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환급조치하시고,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편철되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증거서류들을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존·관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 운영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경고·주의·시정

제 목 ○○○ 노유자시설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소방서 ○○○○○ 소방○ ○○○  
○○소방서 ○○○○○(前 ○○○○○) 소방○ ○○○  
○○소방서 ○○○○○ 소방○ ○○○

### 내 용

####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진압활동 등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 소재 ○○○○○○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95호, 2020. 6. 9.)」 제7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 규정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제5조에 따르면,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별표 2에 따라, 제9호 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로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노유자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고,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sup>6)</sup>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에 따라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21-44호, 2021. 12.

6)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43호, 2021. 3. 25.)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서, 창호도, 소방설계도서 등

16.)」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의 거실 등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고,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 18494호, 2021. 10. 19.)」 제11조·제1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18조·제19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과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실내장식물 방염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20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되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의 종류·방법 및 대상은 별표 3에 따라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일반공사감리의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sup>7)</sup>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되, 부득

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소방공사 감리일지 등을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르면,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이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고, 매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2022. 5. 31. ○○○○○○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및 2024. 5. 24.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했고,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소방공사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감리일지 및 성능시험조사표를 통하여 보다 더 면밀하게 소방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어야 했다.

---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에 따름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건축허가 동의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 건축물 신축허가에 대하여 2022. 5. 31.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동의하면서 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로서 거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및 습식밸브(또는 부압식)가 설계되어야 함에도 설계업체인 ○○○○○○가 지상 1·2층 거실에 표준반응형헤드 및 지상 1층 준비작동식밸브로 설계하였음에도 건축허가 동의하였다.

#### 나. 소방시설 완공검사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및 감리결과 보고에 따라 감리서류 검토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면서 감리업체인 ○○○○○○가 지상 1·2층 거실에 표준반응형헤드와 지상 1층에 준비작동식밸브가 설치되었다고 감리일지 및 성능시험조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2024. 5. 24.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였다.

#### 다.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부적정

소방시설 설계업체인 ○○○○○○는 위 가항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과 다르게 설계하였고,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는 위 나항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과 달리 시공하였으며, 소방공사 감리업체인 ○○○○○○는 위 가·나항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계도서가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태만히 한 채 공사감리를 하였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확인한 바, ○○○○○○는 2024. 5. 23. ○○○○○○에 대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소

방서(○○○○○)에 제출하였는데, 감리원 배치기간인 2023. 6. 1.부터 2024. 5. 21.까지의 기간 중 2024. 4. 13.부터 4. 28.까지 15일간 "국외일정" 외 감리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본 건축물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법에 따라 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감리일지에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조사표 중 41. 방화 및 피난시설 등 확인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2021. 1. 2.부터 2022. 7. 3.까지 ○○소방서 ○○○○○ 건축허가 동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거실에 조기반응형이 아닌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계되었고 이로 인해 지상 1층에 습식이 아닌 준비작동식밸브가 설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한 채 건축허가 동의 하였다.

소방♡ ♡♡♡은 2024.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건축 완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거실에 조기반응형이 아닌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지상 1층에 습식이 아닌 준비작동식밸브가 설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한 채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 ○○○○○ 업무를 수행하면서, ○○○○○○ 거실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부적정하게 설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는 2023. 7.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 업무를 수행하면서, ○○○○○○ 거실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부적정하게 시공·감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6.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시정] ○○○○○○ 소방시설을 규정과 달리 설계·시공·감리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sup>8)</sup>

하시고, 위 건물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허가 동의 등 민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경고·주의·시정·권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서 ○○○○○ 소방○ ○○○

○○소방서 ○○○○○○○○○(前 ○○○○○) 소방○ ○○○

내 용

###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다중이용업소 현황

2024. 9월 기준(휴폐업 제외)

합계	유흥 단란	노래	일반 휴게	PC 게임	고시원	목욕	영화	기타
143	52/7	13	38/7	6/5	1	3	2	9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2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자·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이고, 교육대상자 중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등 이 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6조·제9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계획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통지를 하되 신규교육 대상자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교육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이나 출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시 및 장소와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사항 등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의2·제11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매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였어야 했고, 이 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도록 통지하였어야 했으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결락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도래 대상자를 검색한 후 문자 등으로 교육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교육이수증 또는 이수사실에 따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서 전산 조회를 통해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 후 시스템에 갱신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 및 월간 교육계획을 수립<sup>9)</sup>하지 않았고 교육대상자의 이수여부에 대한 결과보고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나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보수교육 미이수자 조치 태만

감사일 현재 ○○소방서 관내 정상 영업중인 143개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 등 4개소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소방서(○○○○○○)에서는 위 가항과 같이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이수 대상에 대한 적발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에 대하여는 보수교육 도래일 전인 2024. 6. 17. 문자로 안내하였으나 전화번호 오류로 교육통보가 되지 않았고, 그 외 ○○○○○○○○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감사실시 전까지 보수교육 통보를 실시하지 않았다.

9) ○○소방서에서는 2015년경부터 연간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다.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위반자 수시교육 미실시

○○소방서(○○○○○○)에서는 2022년 12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 등 2개소의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발부하였음에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수시교육을 받도록 통보하거나 수시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3.까지, 소방♡ ♡♡♡은 2022. 7. 4.부터 2023. 7. 2.까지, 소방♣ ♣♣♣은 2023. 7. 3.부터 2024. 1. 1.까지, 소방◇ ◇◇◇는 2024.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7. 10.까지, 소방△ △△△는 2022. 7. 11.부터 2023. 7. 9.까지, 소방◇ ◇◇◇는 2023. 7.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는 2021. 7. 5.부터 2022. 7. 10.까지,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담당자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규정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 이수여부에 대한 결과보고를 결락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자 발생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무자 등이 1년 내외 주기

로 교체된 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현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 ◆◆◆는 2023. 1.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 ○○○○○○○○○에 대한 보수교육 통지 및 미이수에 따른 적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1. 3.까지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및 ○○○○○○○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결과 피난안내도 미부착 등으로 수시교육 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6.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 ① [부서경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서경고」 처분하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시정]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 및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중 이용업소 및 화재안전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④ [권고] 연간·월간 교육계획 수립과 휴업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현황과 교육대상자를 정기적으로 현행화시키고, 다중이용업주 등 교육 통보 시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 이외에 이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집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내하시기 바랍니다.